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68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68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2688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민사원

변론종결 2022. 3. 18.

판결선고 2022. 4.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268848 판결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109,0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6,1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30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381,8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6,3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들이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한 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의 소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분은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로서 채무자인 피고 B는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바, 피고 B가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 C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79,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C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2,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6,109,090원 $[(\text{이 사건 부동산 시가 } 102,000,000\text{원} - \text{채권최고액 } 68,400,000\text{원}) \times \text{피고 B의 상속지분 } 2/11, \text{ 원 미만 버림}]$ 이 된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557,9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6,109,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109,09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6,10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B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별지